

安定化施策下의 輸出支援方式에 관한 分析

李 性 變
姜 聲 潤

▷ 目 次 ◁

- I. 序 言
- II. 輸出金融支援制度
- III. 租稅支援制度
- IV. 關稅還給과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
- V. 安定化 · 輸入開放 및 評價切下
- VI. 要約 및 政策提言

I. 序 言

本稿에서는 80年代에 추진된 安定化施策이 輸出支援制度의 支援效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하여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incentive structure)가 어떻게 變化되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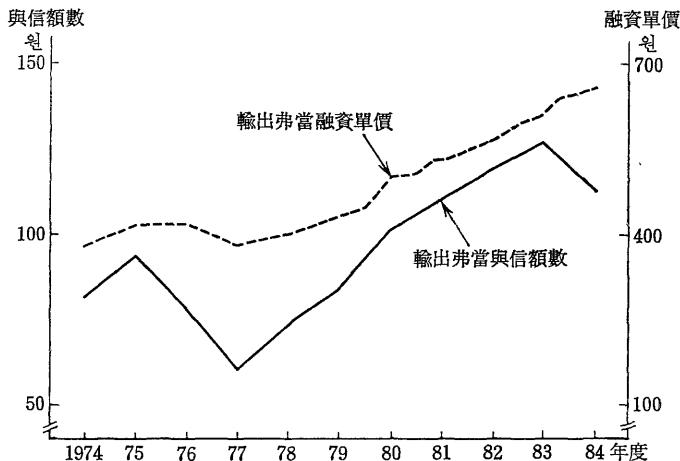
定化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하한 補完措置들이 要望되는가 하는 문제가 輸入開放 및 評價切下의 문제와 관련하여 論議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輸出支援制度의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制度를 통하여 나타난 支援效果의 實績을 중심으로 論議를 전개한다.

本稿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第Ⅱ章에서 輸出金融制度에 의하여 공급되는 輸出支援效果가 推定되었고 第Ⅲ章에서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輸出支援效果가 推定되었다. 第Ⅳ章에서는 關稅還給制度의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었으며 關稅還給制度로 말미암아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效果와 輸出產業에 대한 支援效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產業의 附加價值生產에 미치는 支援 및 保護의 效果들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실제로 우리 경제의 輸入代替產業部門에 대한 保護率과 輸出產業部門에 대한 支援率의 推移를 비교하고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가 점차 輸入代替型으로 變化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第V章

筆者：李性變—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姜聲潤—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筆者は 本稿를 作成함에 있어서 院內討議에 참가하였던 本院의 여러 研究委員들의 論評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주지해 둔다. 그러나 本稿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誤謬는 물론 전적으로 筆者の 책임임을 밝혀둔다.

〔圖 1〕 輸出弗當 輸出金融 與信額數



資料：〈附表 1〉 참조

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政策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輸入開放 및 評價切下의 문제와 함께 論議되고 있고 第VI章에서는 要約 및 政策提言을 담고 있다.

II. 輸出金融支援制度

1. 輸出金融의 供給實績

金融市場의 效率的으로 資金配分의 機能을 수행하여 오지 못한 우리의 경제여건에서 輸出金融制度는 원활한 輸出活動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이 되는 支援制度이다. 輸出金融은 國內與信供給計劃(DC: Domestic Credit)에 의하여 量的規制를 받는 一般金融과 달리 融資適格對象만 인정되면 規制받지 않고 制限없이 供給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輸出金融은 短期輸出金融과 中·長期輸出金

融으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銀行金融機關의 “輸出金融規程”에 의하여 公급되는 資金을 의미하고, 後者는 輸出入銀行을 통해 船舶, 플랜트 및 資本設備를 輸出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을 융통하여 주는 金融을 의미한다.

中·長期輸出金融은 事業別로 결정이 되고 輸出入銀行에서만 취급되기 때문에 輸出金融의 特殊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輸出金融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短期輸出金融을 가리킨다. 資金의 額數에 있어서도 〈附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短期輸出金融이 中·長期金融보다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圖 1〕에서는 輸出金融(短期)의 취급실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輸出弗當 輸出金融與信額數가 그려져 있으며 동시에 美弗當 輸出金融의 融資單價를 그려 놓고 있다. 그림에는 輸出金融의 融資單價와 병행하여 증가하여 온 輸出弗當 與信額數가 나타나 있다.

〔圖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輸出金融이 輸出의 成長과 함께 擴大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원貨가 評價切下되고 輸出弗當 融資單價가 上昇함에 따라서 輸出弗當 與信額數도 대체로 上昇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輸出金融이 輸出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效果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效果는 資本市場이 市場 본연의 資金配分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企業이 만성적인 資金不足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金利上의 惠澤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金利上의 惠澤은 資金의 機會費用과 輸出金融金利와의 差로써 測定할 수 있다. 資金의 機會費用과 輸出金融金利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名目指標를 이용하여 資金의 名目機會費用과 輸出金融의 名目金利를 비교하는 방법과 實質指標를 이용하여 資金의 實質機會費用과 輸出金融의 實質金利를 비교하는 두 가지가 있다.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惠澤을 測定한다는 점에 있어서 同等(equivalent)하나¹⁾, 실제로 輸出支援惠澤을 推定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方法은 長短點을 가지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선 一般貸出金利, 會社債收益率, 私債金利를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으로 간주하고 輸出金融金利(名目)와 이를 각각의 金利와의 차이를 金利上의 支援惠澤으로 파악하

여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惠澤과 效果를 測定하였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와 併行하여서 輸出金融의 支援惠澤을 資金의 實質機會費用과 輸出金融의 實質金利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後述되는 바와 같이 輸出金融의 支援惠澤을 資金의 實質機會費用과 輸出金融의 實質金利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을 把握하기 위해 어떤 金利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名目指標에 의한 輸出支援效果의 推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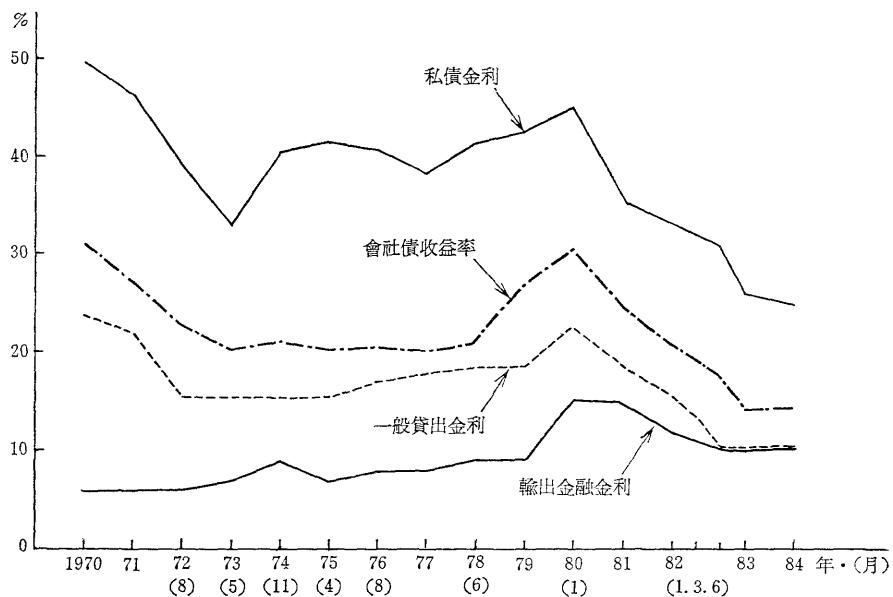
名目指標에 의한 輸出金融의 支援效果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輸出金融金利(名目)와 이와 비교해야 할 資金의 機會費用을 표시할 수 있는 名目金利의 水準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資金의 機會費用을 표시할 수 있는 名目金利의 水準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金利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는 점이다. 다만 私債金利는 金融當局이 정책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金利와 달리 規制를 받지 않는 資本市場에서 자유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을 가장 근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흔히 주장된다²⁾. 本稿에서는 私債金利와 아울러서 會社債收益率 그리고 一般貸出金利의 3가지 指標를 사용하여서 이들과 輸出金融金利를 비교함으로써 輸出金融으로 인한 支援效果를 파악하였다. [圖 2]는 輸出金融金利, 一般貸出金利, 會社債收益率 및 私債金利의 變化推移를 70年代와 80年代에 있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輸出金融으로 말미 암아 輸出產業이 받는 惠

1) 輸出金融 金利上의 惠澤 = 資金의 名目機會費用 - 輸出金融의 名目金利 = (資金의 名目機會費用 - 都賣物價上昇率) - (輸出金融의 名目金利 - 都賣物價上昇率) = 資金의 實質機會費用 - 輸出金融의 實質金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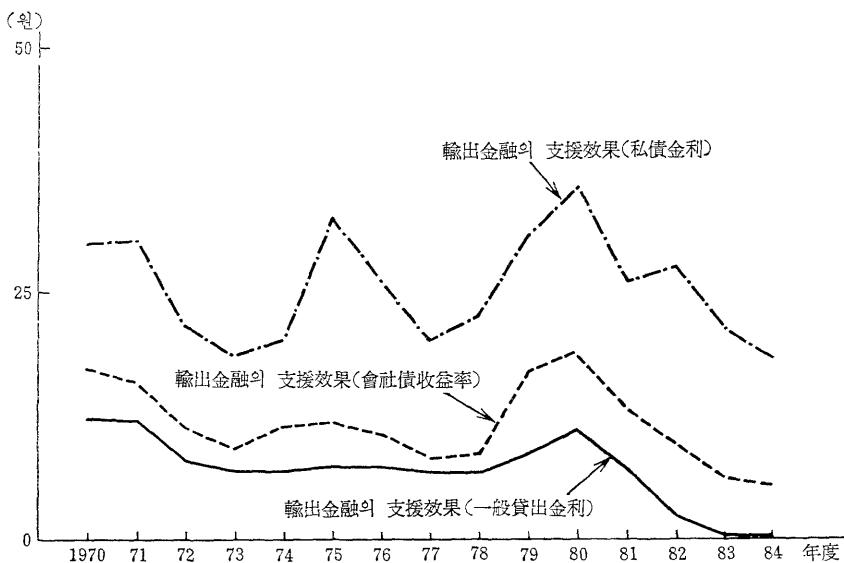
2) 私債金利가 資本의 名目機會費用에 근사하다는 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論議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D. C., Cole and Y.C., Park,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1945~1978*, ch. 4.

〔圖 2〕 輸出金融 등 各種 金利의 變動推移



資料：〈附表 2〉 參照

〔圖 3〕 輸出金融의 支援效果



資料：〈附表 2〉 參照

澤, 즉 輸出支援惠澤은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을 표시하는 指標로 선정된 金利와 輸出金融金利와의 差를 每年 總輸出金融實績으로 곱하여 줌으로써 구하였고, 每輸出弗當 귀속된 輸出金融의 支援惠澤, 즉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效果는 1年을 단위로 계산된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惠澤을 그 年度의 輸出實績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計算하였다. [圖 3]은 一般貸出金利, 會社債收益率 및 私債金利를 각각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으로 파악하여 推定한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效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私債金利를 사용하여 支援效果를 추정한 경우가 가장 起伏이 심한 支援效果의 變化推移를 보여주고 있는데 輸出金融의 支援效果가 가장 높았던 1974~75年間과 1979~80年間이 가장 심한 인플레를 경험하였던 期間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會社債收益率을 사용하여 支援效果를 推定한 경우도 私債金利를 사용한 경우와 비록 振幅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起伏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一般貸出金利를 사용한 경우는 80年代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별반 큰 起伏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

3) 金融機關의 一般貸出金利를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一般貸出金利는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으로 간주하여 推定된 輸出金融의 支援效果에는 인플레로 인하여 발생하는 金融支援效果의 變化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一般貸出金利 자체도 金融機關에서 一般貸出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餘他의 費用을 包含하여 계산한 一般貸出의 實效金利(effective interest rate)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유행은 일반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貸出된 자금의 일부를 낮은 利子率이 적용되는 預金의 형식으로同一銀行에 預置해 두는 것과 같이 補填殘高(compensating balance)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負擔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DI,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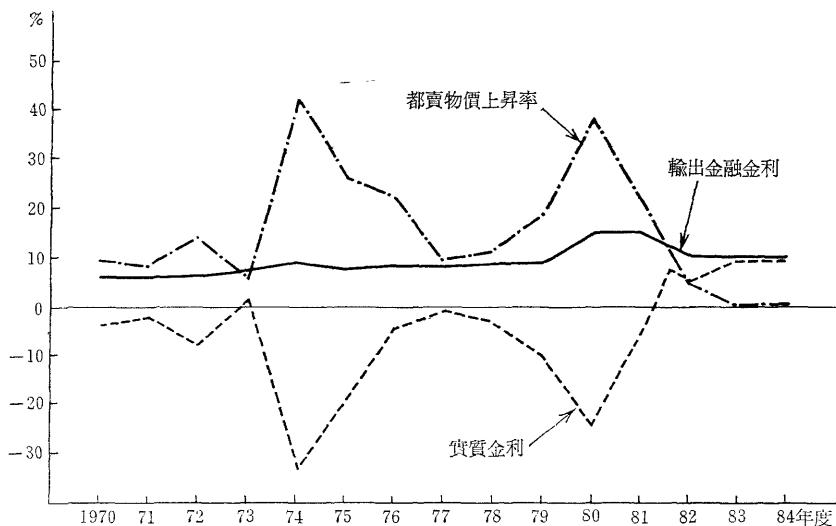
4. 實質指標에 의한 輸出支援效果의 推定

인플레는 一般貸出과 輸出金融을 통틀어서 金融機關에 대한 元利金償還의 負擔이 物價上昇率에 관계없이 政策的으로 固定된(즉 固定된 名目價值로 負擔이 표시되는) 모든 類型의 金融貸出에 대하여 그만큼 惠澤을 증가시킨다. 이때 金融貸出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인플레를 통하여 혜택을 공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經濟的 負擔은 인플레租稅라는 形태로 現金 또는 名目價值가 固定된 資產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워지게 되는 것이다.

輸出金融의 輸出支援惠澤이 인플레에 의하여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은 輸出金融金利에서 都賣物價上昇率을 差減한 輸出金融에 대한 實質金利水準의 推移를 보여주고 있는 [圖 4]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는 70年代를 통하여 80年代初에 이르기까지 輸出金融에 대한 實質金利는 언제나 負의 數值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金融機關을 통하여 信用을 얻어가지고 단지 物價上昇率만큼의 收益만 얻을 수 있으면(또는 貸出받은 돈의 實質價值만 유지할 수 있으면) 인플레로 인하여 元利金償還의 實質的 負擔이 낮아진 만큼의 利益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輸出金融의 支援惠澤을 資金의 實質機會費用과 輸出金融의 實質金利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資金의 實質機會費用을 推定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資金의 實質機會費用에 관한 推定值는 다만 洪元卓 教授에⁴⁾ 의하여서 이루어진 1954~75年間의 製造業部門의 資本收益率 資料만이入手가 가능하였기

[圖 4] 輸出金融의 實質金利



資料：〈附表 2〉 참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 資料에 근거하여서 다음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銀行貸出資金의 金利補助를 推定하는 作業에서 洪敘授는 여러 방법에 의하여서 얻어진 推定值 중에서 1972~75年間에는 製造業部門의 資本收益率로 27%를 選擇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20%, 25%, 30%의 3個의 資本收益率水準을 선택하여 本稿의 分析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資金의 實質機會費用이 이 수준에서 固定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결국 이렇게 해서 얻어진 支援惠澤에는 資金의 實質機會費用이 固定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로 인하여 輸出金融의 實質金利가 變動하여 나타나는 效果만이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이 製造業部門의 資本收益率을 20%, 25%, 30%의 수준에서 각각 固定시킴으로써 資金의 機會費用을 파악하고 따라서 인플레로 인하여 변화된 輸出金融의 支援惠澤을 계산하고 이 支援惠澤을 다시 輸出額數로 나누어서 實質指標로 계산한 輸出金融의 支援效果가 〈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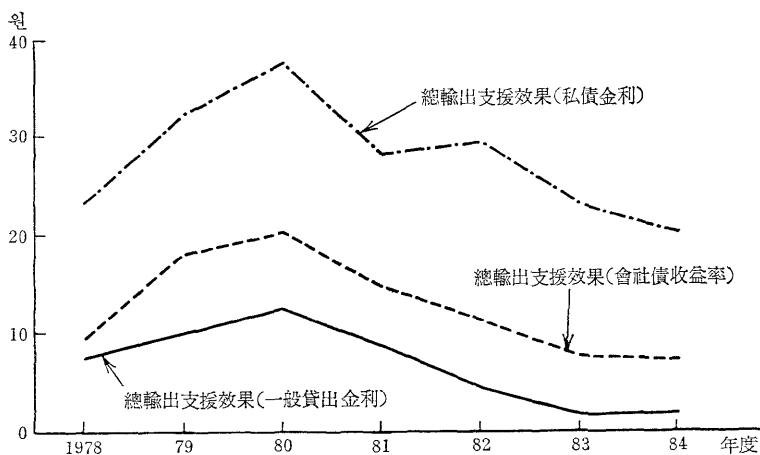
表 2〉에 나타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金融의 支援效果는 인플레가 加速化되던 70年代末에는 급격히 상승하다가 物價安定이 이룩된 80年代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下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0年代에 있어서의 輸出金融의 支援效果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나마 머무르게 된 것은 輸出弗當融資單價의 上昇으로 말미암아 物價安定으로 인한 輸出金融의 支援惠澤의 減少가 어느 정도 相殺되었기 때문이다.

III. 租稅支援制度

1. 輸出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輸出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에는 準備金制度, 特別償却制度, 附加價值零稅率制度, 特消稅 및 酒稅免除 그리고 海外接待費 損費認定

[圖 5] 租稅 및 輸出金融의 總輸出支援效果



註：租稅支援에는 準備金에 의한 支援만 포함。

資料：〈附表 2〉〈附表 3〉 참조。

등의 制度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租稅支援制度는 準備金制度와 特別償却制度라고 할 수 있다. 附加價值零稅率制度는 비록 國內에서는 課稅가 면제되나 輸入國에서 다시 徵收되기 때문에 輸出企業에게는 免稅의 惠澤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租稅支援에서 除外시켰다⁵⁾.

또한 資料入手의 어려움, 資料의 信賴度, 그리고 餘他의 支援效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比重 등의 이유로 特消稅, 酒稅의 免除, 海外接待費의 損費認定에 의한 支援效果는 計算에서 제외하였다.

2. 準備金制度의 支援效果

準備金制度에 의한 惠澤은 현재의 시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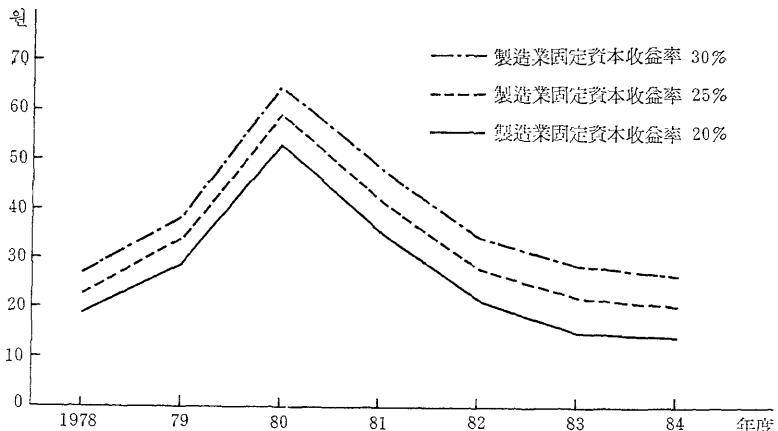
발생한 法人稅의 負擔을 미래의 시점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減價償却制度는 儻却額數만큼 課標를 낮아지게 하는 效果가 있다. 따라서 特別償却制度에 의하면 課標를 낮추는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減價償却의 惠澤을 增加시키는 效果를 가진다. 이와 같이 減價償却의 惠澤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惠澤이 特別償却制度의 支援惠澤이 된다. 이를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支援惠澤은 未來의 時點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未來의 所得을 現在價值로 환산함으로써 支援惠澤의 計算이 可能하다⁶⁾. 〈附表 3〉에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算出된 準備金 및 特別償却의 支援效果가 나타나 있다. 이들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輸出支援效果의 特徵은 그것이 輸出金融의 支援效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微微한 額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同表에 의하면 準備金制度에 의한 支援效果는 조사된 全期間을 통하여 安定的인 趨勢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特別償却에 의한 支援效果는 1980年에 갑자기 대폭 축소된 이후로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外國語大學校의 崔澩 教授와 財務部 金振杓 課長과의 대화에서 힌입은 바 크다. 또한 本院의 金仁哲 博士와 財務部 徐京錫 課長에게 큰 도움을 받았음을 주지해 둔다.

6) 準備金 및 特別償却制度에 의한 支援惠澤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本院의 郭泰元 博士와의 對話에 힌입은 바가 크다.

[圖 6] 租稅 및 輸出金融의 總輸出支援效果



註 : 租稅支援에는 準備金에 의한 支援만 포함.
資料 : 〈附表 2〉, 〈附表 3〉 참조

점차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特別償却에 의한 支援效果가 갑자스럽게 減縮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輸出金融과 租稅支援制度에 의한 支援效果를 합하여 얻은 總輸出支援效果를 계산할 때에는 準備金制度에 의한 支援效果만 包含하였다.

[圖 5]에는 名目指標를 사용해서 計算한 輸出金融의 支援效果와 租稅支援制度의 支援效果를 합하여 만든 總輸出支援效果(名目指標)의 推移가 私債金利와 會社債金利, 一般貸出金利를 이용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 [圖 6]에서는 實質指標를 사용하여 計算한 總輸出支援效果(輸出金融 및 租稅支援)가 製造業部門의 資本收益率을 20%, 25%, 30%의 水準에서 고정시켜서 계산한 경우에 대하여 그려져 있다.

[圖 5, 6]을 통틀어서 公通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용된 指標의 名目, 實質 여부에 관계없이 安定化施策이 추진된 80年代에 들어서서 輸出支援效果가 例外없이 下落하였다는 사실이다.

IV. 關稅還給과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

輸出用原資材의 輸入에 대하여서는 1975年に 事前免稅制度에서부터 關稅還給制度로 改編되었다. 두 制度가 모두 輸出品生產에 소요되는 原資材에 대해서는 關稅의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國內의 輸入代替產業을 위한 保護裝置가 결과적으로 輸出產業으로 하여금 國際價格 이상으로 國產 내지 輸入原資材를 購買하게 함으로써 輸出產業에 대하여 負의 支援效果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關稅還給制度는 還給에 必要한 수속 및 節次, 還給받을 때까지의 자금부담, 그리고 還給에 소요되는 手數料 및 諸般經費 등으로 輸出用原資材에 소요되는 비용이 事前免稅制度의 경우보다 높다. 따라서 還給에 소요

되는 費用을 낮추기 위하여 定額還給制度, 徵收猶豫制度, 記帳相計制度等의 制度의in 補完을 위한 措置들이 採擇되지만 해당초 事前免稅制度에서부터 關稅還給制度로의 制度變更의 목적이 輸出用原資材의 輸入을 抑制하고 國產品使用을 장려하자는 데에 있는 만큼 制度의in 補完에는 限界가 있다.

本章에서는 우선 關稅還給制度下에서 輸出用原資材의 輸入에 관한 한 자유로운 輸入이 保障되어 있다는 假定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輸出產業部門과 輸入代替產業部門은 生產要素市場에서만 競爭關係가 成立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따라서 誘因效果의 相對構造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各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주는 效果를 算出하여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計算해온 輸出에 대한 支援效果와 全產業部門의 平均實效保護率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保護支援制度의 相對的 誘因構造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現行 關稅還給制度下에서 輸出用原資材의 자유로운 輸入을 制約하는 制度들을 열거하고 이들이 輸出企業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輸入代替產業을 保護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1. 輸出用 原資材의 자유로운(無關稅) 輸入

輸出業者들은 輸出用原資材를 輸入함에 있어서 國產品의 價格이 輸入品보다 높으면 輸

7) 본질적으로 이 내용은 「크루거」女史(1978)의 誘因構造의 偏向性(biasedness)이나 「바그와티」教授(1978)의 誘因構造의 中立性(neutrality)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關稅還給制度가 保護·支援의 誘因構造에서 맡은 독특한 역할을 이를 개념을具體化시키는 과정에 反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입이 상당히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가 輸出產業에 대한 負의 支援效果를 갖는 것은 단지 生產要素市場을 통하여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國內의 生產要素를 놓고 輸出產業部門과 輸入代替產業部門이 競爭의in 관계에 처했을 때에 輸入代替產業部門에 대한 保護措置는(關稅 및 非關稅) 이들이 生產要素를 確保하는 데에 있어서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輸出產業部門에 대한 負의 支援效果를 相殺하기 위한 輸出支援도 그것이 附加價值의 生產過程에 미치는 支援效果를 고려하여야 輸出產業部門에 대한 負의 支援效果와 比較가 可能하다. 즉 輸出弗當 支援效果를 輸出의 附加價值率로 나누어 줌으로써 輸出支援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미치는 支援效果를 計算할 수 있다.

輸出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에 대한 支援效果와 비교가 되는 輸入代替產業部門에 대한 保護效果도 同部門의 附加價值生產에 대한 保護效果, 즉 實效保護率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뒤에 輸出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대한 支援率(s)과 輸入代替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대한 保護率(t), 즉 實效保護率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產業部門간에 保護支援制度의 相對的 誘因構造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輸出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대한 支援率이 輸入代替產業部門의 附加價值生產過程에 대한 保護率보다 높으면 保護·支援制度의 相對的 誘因構造는 輸出支援型(export promoting)이라고 하고, 그 반대이면 輸入代替型(import substituting)이라고 하며, 둘이 같으면 中立的(neutral)이라고 한다⁷⁾.

2. 現行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에 대한 評價

〈表 1〉, 〈表 2〉에서는 輸出產業의 平均附加價值率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계산된 輸出弗當總支援效果가 輸出產業部門의 附加價值 1弗生產過程에 주는 支援效果로 轉換되어 있고 이 支援效果가 다시 당시의 換率을 사용하여 輸出支援率(s)로 계산되었다. 輸出支援率이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계속 下向趨勢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實效保護率(t)은 좀처럼 신빙성 있는 資料를 얻기 힘드나 다행히 本院의 產業政策研究에서 推定한 1978, 1982년의 資料가 利用이 可能하였다. 全產業平均 實效保護率은 1978년에서 1982년에 43.1%에서 48.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輸出支援率(s)과 實效保護率(t)을 이용하여 주어진 公式 $(1+s)/(1+t)$ 에 따라서 誘因構造의 偏向係數(coefficient of unbiasedness)를 구한 결과가 名目指標를 사용한 경우에는 〈表 1〉에 實質指標를 사용한 경우에는 〈表 2〉에 나타나 있다.

〈表 1, 2〉를 통하여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계산된 6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偏向係數가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또한 1982년의偏向係數가 1978년에 비교하여서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現行 保護・支援體制가 상대적으로 輸出產業部門에 不利益을 주는 誘因構造라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며,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은 1978년에서 1982年 사이에 더욱 惡化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의 하나는 1983, 19

84年의 偏向係數가 여하히 變화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 두 해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문제의 내용을 다소 바꾸어서 만약 이 두 해의 偏向係數를 1982年에서와 같은 水準에서 錄속하여 유지하려면 주어진 輸出支援率(s) 水準에서는 어느 水準의 實效保護率(t)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資金의 名目機會費用을 私債金利로 把握한 경우에서만 이 作業을 수행하였다. 〈表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2年과 같은 水準의 誘因構造의 偏向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3年의 實效保護率은 1982年의 48.9%에서부터 42.5%로 下落하여야 하고 1984년의 그것은 다시 40.9%로 下落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78년의 實效保護率이 43.1%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급격한 保護率의 下落을 의미한다.

3. 輸出用 原資材 輸入上의 問題點

輸出用 原資材에 관한 한 대체로 輸入이 자 유롭고 關稅負擔이 경감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輸入節次上 그리고 關稅還給上 言及을 요하는 制度上의 制約이 存在하여서 輸出產業部門의 犠牲 위에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制度上의 制約까지 고려하면 誘因構造의 偏向係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制度上의 制約의 하나가 輸出用 原資材의 輸入推薦이다. 原則的으로 外貨獲得用 原資材의 輸入은 期別公告上의 輸入制限이나 數量制限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나 商工部告示에 따른 貿易管理規制에 例示한 輸入推薦對

〈表 1〉 保護・支援政策의 誘因構造(名目指標)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I. 輸出產業의 平均附加價值率 (%)	24.6	24.9	23.5	23.8	22.6	23.8	22.1
II. 輸出美弗當 總支援效果 (원)							
1. 一般貸出金利 基準	7.62	10.01	12.65	8.81	4.14	1.80	1.98
2. 會社債收益率 基準	9.67	18.07	20.27	14.83	11.34	7.54	7.05
3. 私債金利 基準	23.77	32.32	37.41	28.29	29.55	23.35	20.14
III. 附加價值生產의 支援效果 (원)							
1. 一般貸出金利 基準(II.1/I)	30.98	40.20	53.83	37.02	18.32	7.56	8.96
2. 會社債收益率 基準(II.2/I)	39.31	72.57	86.26	62.31	50.18	31.68	31.90
3. 私債金利 基準(II.3/I)	96.63	129.80	159.19	118.87	130.75	98.11	91.13
IV. 換 率(美貨) (원)	484.00	484.00	607.43	681.03	731.13	775.75	805.98
V. 輸出支援率(s) (%)							
1. 一般貸出金利 基準(III.1/N)	6.4	8.3	8.9	5.4	2.5	1.0	1.1
2. 會社債收益率 基準(III.2/N)	8.1	15.0	14.2	9.1	6.9	4.1	4.0
3. 私債金利 基準(III.3/N)	20.0	26.8	26.2	17.5	17.9	12.6	11.3
VI. 實效保護率(t : 全產業平均) (%)	43.1	n.a.	n.a.	n.a.	48.9	(42.5)	(40.3)
VII. 偏向係數($1+s$)/($1+t$)							
1. 一般貸出金利 基準	0.74	n.a.	n.a.	n.a.	0.69	n.a.	n.a.
2. 會社債收益率 基準	0.76	n.a.	n.a.	n.a.	0.72	n.a.	n.a.
3. 私債金利 基準	0.84	n.a.	n.a.	n.a.	0.79	(0.79)	(0.79)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韓國開發研究院，『產業政策의 基本課題外 支援施策의 改編方案』，1982。

〈表 2〉 保護・支援政策의 誘因構造(實質指標)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I. 輸出產業의 平均附加價值率 (%)	24.6	24.9	23.5	23.8	22.6	23.8	22.1
II. 輸出美弗當 總支援效果 (원)							
1.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0%	18.95	29.02	53.52	35.66	21.29	15.74	15.21
2. " 25%	22.93	33.62	59.29	42.06	28.11	22.57	21.39
3. " 30%	26.90	38.23	65.07	48.46	34.93	29.40	27.57
III. 附加價值生產의 支援效果 (원)							
1.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0%(II.1/I)	77.03	116.55	227.74	149.83	94.20	66.13	68.92
2. " 25%(II.2/I)	93.21	135.02	252.30	176.72	124.38	94.83	96.79
3. " 30%(II.3/I)	109.35	153.53	276.89	203.61	154.56	123.53	124.75
IV. 換 率(美貨) (원)	484.00	484.00	607.43	681.03	731.13	775.75	805.98
V. 輸出支援率(s) (%)							
1.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0%(III.1/N)	15.9	24.1	37.5	22.0	12.9	8.5	8.5
2. " 25%(III.2/N)	19.3	27.9	41.5	25.9	17.0	12.2	12.0
3. " 30%(III.3/N)	22.6	31.7	45.6	29.9	21.1	15.9	15.5
VI. 實效保護率(t : 全產業平均) (%)	43.1	n.a.	n.a.	n.a.	48.9	n.a.	n.a.
VII. 偏向係數($1+s$)/($1+t$)							
1.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0%	0.81	n.a.	n.a.	n.a.	0.76	n.a.	n.a.
2. " 25%	0.83	n.a.	n.a.	n.a.	0.79	n.a.	n.a.
3. " 30%	0.86	n.a.	n.a.	n.a.	0.81	n.a.	n.a.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各年度。

韓國開發研究院，『產業政策의 基本課題外 支援施策의 改編方案』，1982。

象品目에 대하여서는 비록 輸出用原資材라 하더라도 生產者協會 등에 수입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國內에서의 購買價格이 海外에서의 輸入費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輸入推薦을 요구하는 輸出業者와 輸入推薦機關 사이에서 協商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國내에서의 購買價格과 海外價格 사이에 價格差를 調整하고 國내의 購買價格이 이를 上廻할 때에는 輸入취터를 늘리는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일단 輸入된 輸出用原資材에 대해서는 輸入通關時 納付한 關稅의 全額을 還給해 주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는데 個別還給에 있어서 輸出物品의 國產原資材 使用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原材料로서 關稅廳長이 지정하는 物品에 대하여서는 輸入한 때에 納付한 關稅中에서 當該原材料의 國產化比率에 해당하는 關稅를 공제한 金額만이 還給되고 있는 實情이다.

V. 安定化 · 輸入開放 및 評價 切下

1. 安定化의 政策基調

80年代에 들어서서 추진된 安定化施策은 保護·支援 및 政府主導에 의하여 움직이던 經濟體制를 市場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企業이 자율적으로 意思를 결정하도록 하는 體制로 전환시킴으로써 資源分配의 歪曲과 生產의

非效率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施策의 일환으로各種의 不實輸出을 초래하였던 輸出金融의 惠澤, 즉 輸出金融金利와 一般貸出金利의 金利「마진」幅이 除去되었고 物價의 安定이 追求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安定化의 政策基調의 当위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安定化施策을 具現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資源分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incentive structure)에 있어서 심각한 歪曲(또는 偏向化) 現象을 防止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表 1, 2>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는 심하게 輸入代替型으로 移行하였다. 즉 [圖 5,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支援效果는 安定化施策이 추진되던 기간 중에 심각하게 下落되었으나 輸入代替產業에 대한 保護措置는 그렇게 신속하게 除去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安定化施策自體에 있다기보다 安定化施策의 추진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資源分配上의 偏向化를 방지할 수 있는 补完措置가 併行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輸入開放과 評價切下

<表 3>에는 80年代에 들어와서 추진된 또는 추진되어어야 할 各種 安定化政策과 그 补完政策이 輸出產業部門, 輸入代替產業部門, 그리고 非交易財 產業部門에 어떤 支援 내지 保護效果를 주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0年代에 추진된 安定

化政策(物價安定, 輸出金融金利와 一般貸出金利 사이의 金利差 解消)으로 말미암아 輸出產業部門은 [圖 5, 6]에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하게支援效果가 減縮되는 경향을 하였다. 한편 物價가 安定됨으로 말미암아 交易財의 價格競爭力이 향상되어서 비록 微微하나마(왜냐하면 交易相對國보다 物價가 더 安定의이어야 하기 때문에)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에 正의 支援效果가 주어지게 되었다고는 하나, 物價의 安定을 통하여 正의 支援效果가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物價가 交易相對國의 物價보다 그만큼 더 安定의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物價의 安定이 交易財產業의 價格競爭力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기여할 수는 있겠으나 輸出產業이 경험한 심각한 支援效果의 下落을 補完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正의 支援效果를創出할 수는 없었다고 보겠다.

輸出產業部門에 대한 支援效果는 심각하게縮小되었으나 輸入代替產業部門에 대한 保護效果는 별로 심각하게縮小된 듯하지 않다는 사실은 <表 1, 2>의 誘因構造의 偏向係數가 19

78년과 1982年 사이에 크게 악화된 사실로 짐작된다. 그러나 설령 輸入代替產業部門에서도 같은 速度로 保護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補完政策으로 원貨의 評價切下가 뒤따라야 했고 따라서 같은 속도로 實質換率의 評價切下가 일어났어야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輸出產業에 대한 支援率을 같은 비율로 감소시키면 이것은 實質換率로 自國貨幣가 그만큼의 評價切上된 effect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交易財產業은 그만큼 負의 支援效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資源이 非交易財產業으로 우선적으로 配分되도록 誘因構造가 傷害化되게 된다.

輸出支援效果의 減縮에 따른 補完措置로 評價切下를 併行하게 되면 交易財產業과 非交易財產業間의 資源分配上의 歪曲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評價切下 자체만으로는 不充分하지만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間의 資源分配上의 偏向化를 시정시켜 주는 데에도 기여한다. 輸入代替產業의 保護率은 同製品의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差를 國際價格과 比較함으로써 算出하게 되는데 評價切下가 있게 되면 國際價格 자체가 上昇하기 때문에 保護率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나타나는 保護率의 下落은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간의 資源分配의 偏向性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評價切下와 함께 非關稅障壁의 除去 또는 關稅引下를 통한 輸入開放의 노력이 併行되어야 한다. 즉 安定化施策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輸出支援效果의 減縮에 따른 補完措置는 評價切下를 통하여 實質換率을 引上시키는 것과 아울러 輸入開放의 政策을 併行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表 3>에 나타나 있다.

<表 3> 安定화 및 補完政策의 支援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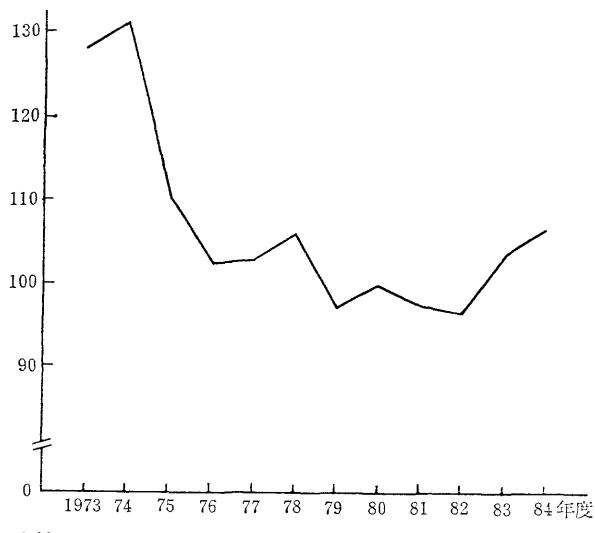
政策變化	產業部門		
	輸出產業	輸出代替產業	非交易財產業
輸出金融 金利差解消	↓		
物價安定	↓		
租稅 變化徵免		↓	
輸入開放 換率		↓	
物價安定 評價切下	↑	↑	↓

註: ↓=심각한 支援效果의 減縮을 의미함.

↑=微微한 支援效果의 增大를 의미함.

↓=支援效果의 減縮이 補完政策으로 採擇되어야 함을 의미함.

[圖 7] 원貨實質換率指數와 變動推移



資料 : 〈附表 1〉 참조

開途國 外換政策의 일반적인 현상은 自國의 貨幣가 過大評價(overvaluation)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開途國의 貨幣가 過大評價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비록 貨幣가 過大評價되어 있더라도 輸入規制를 통하여 國際收支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貨幣가 過大評價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에 발생하는 輸入代替產業으로의 資源配分의 偏向化現象은 이를 상쇄하도록 輸出產業에 대하여 補助金을 支給하는 政策이 흔히 권고되고 있다.

自國貨幣가 過大評價되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資源의 配分이 輸入代替產業으로 偏向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國際收支가 均衡에 到達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保護・支援制度의 誘因構造의 偏向性을 除去하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國際收支의 均衡이 均衡된 誘因構造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輸入의 規制

를 통하여 達成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輸入이 規制되고 自國의 貨幣가 過大評價되어 있는 경제에는 地代追求(rent-seeking) 行爲 및 生產의 非效率(x-inefficiency) 등 주어진 資源을 效率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浪費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自國貨幣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열거해 보면, 輸出不振, 輸入自由化不振外에 外債壓力加重, 國際收支問題深化, 地代追求(rent-seeking)行爲 만연, 菲요欲는 輸入品, 輸入代替品, 輸出品의 需要上昇으로 인한 「인플레」, 「서비스」產業(유통업, 음식료업 등)의 확대 등이 있다.

[圖 7]은 1980年을 基準年度로 하여 계산한 원貨의 實質實效換率指數의 變動推移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림에는 物價安定과 원貨의 評價切下에 힘입어 1983年, 1984년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實質實效換率指數의 上昇現象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의

換率引上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유의해야 할 점은 開途國의 評價切下는 輸入障壁이 크지 않은 先進國의 評價切下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先進國에는 輸入規制와 이로 말미암은 自國貨幣의 過大評價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開途國의 評價切下의 문제는 自國貨幣가 과대평가된 부분을 是正한다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다. 즉 評價切下를 통하여 自國貨幣의 과대평가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資源分配의 歪曲現象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評價切下는 輸入開放과 併行하여서 推進되어야 하는 것이다. 評價切下와 輸入開放이 동시에 推進되며 이것은 輸出產業을 支援하는 效果를 가지게 되며 결국 保護支援 誘因構造의 輸入代替偏向性을 제거해 주게 된다. 물론 評價切下의 幅은 그것이 인플레를 誘發할 것인지의 與否에 의하여서 制約되는 것이나 開途國의 自國貨幣 過大評價現象을 拂拭시키기 위하여 換率引上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不必要한 輸入 및 輸入代替品 그리고 輸出品에 대한 國內需要가 鎮靜되어서 換率引上에 따른 物價上昇의 現象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評價切下가 國際收支를 均衡시키는 수준에 만족하여 머물러서는 안되고 설령 國際收支가 均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評價切下로 인하여 인플레가 초래되지 않는 범

위에서라면, 持續的인 輸入開放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輸出에 대한 支援率이 낮아진 수준만큼 國內產業에 대한 保護率도 낮아질 수 있도록, 評價切下가 輸入開放을 위한 與件을造成하기 위하여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 自國의 貨幣가 過大評價되어서 輸入規制의 장벽이 두터운 國家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國際收支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輸入開放에 대한 저항이 높다. 따라서 評價切下를 통하여 國際收支의 압박을 늦추고 설사 輸入開放(또는 非關稅規制로 轉換한다는 의미에서의 輸入自由化)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評價切下를 통하여 강화된 價格競爭力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國內生產業者들의 저항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계획대로 輸入開放이 推進될 수 있는 것이다⁸⁾.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評價切下와 輸入開放이 추진되어서 保護·支 援政策의 誘因構造가 中立性(neutrality)을 회복하여야 輸出產業部門에 資源이 流入되고 輸出企業이 活力を 되찾으며 輸出主導에 의한 經濟成長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둘 일은 과거와 같이 輸出에 強力한 誘因을 提供하자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우선 현재와 같은 國際貿易環境에서 그것도 선진국의 注視를 받고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 이것은 先進國의 輸入規制를 自超하는 政策이다. 더 나아가서 輸出「드라이브」政策의 罪解와 安定化基調의 定着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인식된 상황에서 이것은 退步를 의미한다. 그러나 輸入開放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誘因構造의 中立性이 보장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輸出支援政策은 先進國의 輸入規制를 誘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8) 이것이 바로 NBER의 광범위한 研究 「프로젝트」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를 종합하면서 「크루거」女史가 제시한 政策이며 오늘날의 台灣을 가능하게 하였던 外貨預置證書의 自由賣買(Foreign Exchange Surrender Certificate System) 政策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台灣에서는 50年代末 外換預置證書의 自由賣買와 동시에 輸入開放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VI. 要約 및 政策提言

本稿에서는 80年代에 추진된 安定化施策으로 말미암아 輸出支援效果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반면에 輸入代替產業部門에 대한開放化는 별반 큰 진전이 없어서 保護·支援政策의 誘因構造의 輸入代替型으로의 偏向성이 더욱 深化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評價切下와 輸入開放政策을 적절히 混合하여 사용함으로써 원貨의 過大評價를 解消하고 궁극적으로는 保護·支援政策의 誘因構造에 中立性을 보장하여 輸出產業部門에 資源의 流入을 誘導하고 活力を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誘因構造에 中立性이 보장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輸出產業部門이 받는 不利益을 해소하기 위하여 先進國의 輸入規制를 誘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輸出支援措置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혔다.

〈附表 1〉 輸出金融 供給實績

(단위 : 원)

	總輸出 (百萬弗)	總輸出一 船舶輸出 (百萬弗)	短期輸出金 融年末殘額 (億원)	中長期 輸出金融 (億원)	輸出弗當 短期金融	生產・生產 集荷資金 弗當融資單價	對美換率 (年平均)	實質實效 換率指數
1974	4,460.4	(A) 4,386.4	(B) 3,595	34	(B/A) 82	(月) 420(12)	484.00	131.07
1975	5,081.0	4,943.2	4,629	291	94	420	484.00	110.01
1976	7,715.3	7,438.6	5,825	496	78	420	484.00	102.27
1977	10,046.5	9,520.2	5,683	986	60	380(10)	484.00	102.44
1978						400 (1)		
	12,710.6	11,909.2	8,835	1,272	74	420 (7)	484.00	105.82
1979	15,055.5	14,540.6	12,274	1,586	84	450 (7)	484.00	97.06
1980						500 (1)		
						510 (6)		
	17,504.9	16,887.3	17,208	3,002	102	530(10)	603.03	100.00
1981	21,253.8	19,842.4	21,972	5,241	111	530	681.03	97.68
1982						560 (1)		
						590 (5)		
	21,853.4	19,021.7	22,784	7,016	120	610(11)	731.13	96.55
1983	24,445.1	20,710.1	26,200	7,195	127	660(11)	775.75	103.45
1984	29,244.9	24,561.3	27,654	8,503	113	660	805.98	106.91

註：1) 實質實效換率指數加重值(1980年 交易量 基準)，美國 0.4416，日本 0.4137，西獨 0.0703，英國 0.0407，韓國 0.0336。
 資料：財務部，『財政金融統計』，各月。

韓國銀行，『조사통계월보』，各號。

〈附表 2〉 輸出金融의 支援效果

(단위 : %, 원)

	輸出實績 (百萬弗)	輸出金融 (億원)	輸出金融利 金利	都賣物上昇率	賣價(輸出金融)	實利(輸出金融)	一般貸出金利	會社債收益率	私債金利	輸出弗當支援效果 (名目指標) ²⁾			輸出弗當支援效果 (實質指標) ²⁾		
										一般貸出利	會社債收益率	私債金利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0%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25%	製造業固定資本收益率 30%
1970	835.2	574	6.0	9.4	-3.4	24.0	31.3	49.8	12.36	17.39	30.10	16.07	19.51	22.95	
1971	1,067.6	802	6.0	8.6	-2.6	22.0	27.3	46.4	12.02	16.00	30.36	16.98	20.74	24.50	
1972	1,624.1	1,080	6.0	13.8	-7.8	15.5	22.9	39.0	7.65	11.24	21.92	18.48	21.80	25.13	
1973	3,225.0	2,249	7.0	6.9	0.1	15.5	20.5	33.3	6.63	9.41	18.69	13.88	17.37	20.85	
1974	4,460.4	3,629	9.0	42.1	-33.1	15.5	21.0	40.6	6.92	11.39	24.06	43.22	47.29	51.36	
1975	5,081.0	4,920	7.0	26.5	-19.5	15.5	20.1	41.3	7.32	11.77	32.25	37.34	42.18	47.02	
1976	7,715.3	6,321	8.0	12.2	-4.2	17.0	20.4	40.5	7.20	10.60	26.29	20.27	24.36	28.46	
1977	10,046.5	6,669	8.0	9.0	-1.0	18.0	20.1	38.1	6.74	8.13	20.06	14.04	17.36	20.67	
1978	12,710.6	10,107	9.0	11.6	-2.6	18.5	21.1	41.2	6.72	8.77	22.87	18.05	22.03	26.00	
1979	15,055.5	13,860	9.0	18.8	-9.8	18.5	26.9	42.4	8.53	16.59	30.84	27.54	32.14	36.75	
1980	17,504.9	20,210	15.0	38.9	-23.9	24.5	30.1	44.9	11.01	18.63	35.77	51.88	57.65	63.43	
1981	21,253.8	27,313	15.0	20.4	-5.4	18.5	24.4	35.3	7.02	13.04	26.50	33.87	40.27	46.67	
1982			12.0			15.5									
			(1)			11.0									
			(3)			13.5									
	21,853.4	29,800	10.0	4.7	5.3	10.0	17.3	30.6	2.35	9.55	27.76	19.50	26.32	33.14	
1983	24,445.1	33,395	10.0	0.2	9.8	10.0	14.2	25.8	0.29	6.03	21.84	14.23	21.06	27.89	
1984	29,244.9	36,157	10.0	0.7	9.3	10.0	14.1	24.7	0.29	5.36	18.45	13.52	19.70	25.88	

註：1) 輸出金融과 輸出金融金利는 長·短期로 區分하여 계산하였음.

2) 輸出弗當支援效果는 各種金利와 輸出金融金利와의 差를 輸出金融額에다 곱하여 산출된 輸出金融으로 인한 惠澤을 輸出額數로 나누어 計算하였음.

資料：財務部,『財政金融統計』,各月.

韓國銀行,『조사통계월보』,各號.

韓國證券去來所,『주식』,各號.

〈附表 3〉 租稅支援效果

(단위 : 원)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準備金支援效果	0.90	1.48	1.64	1.79	1.79	1.51	1.69
特別償却支援效果	2.17	2.54	1.07	0.47	0.38	0.11	0.09

註 1) 準備金支援惠澤 = $R \cdot \tau [1 - \frac{1}{3} \{ \frac{1}{(1+r)^3} + \frac{1}{(1+r)^4} + \frac{1}{(1+r)^5} \}]$

R : 準備金, τ : 法定限界稅率, r : 利子率

準備金支援效果 = 準備金支援惠澤 ÷ 輸出實績

2) 減價償却惠澤

一般償却 $A = 0.1P \cdot \tau [1 + \sum_{i=1}^9 \frac{1}{(1+r)^i}]$

特別償却 $B = 0.13P \cdot \tau [1 + \sum_{i=1}^6 \frac{1}{(1+r)^i}]$

特別償却의 支援惠澤 = $B - A$

特別償却의 支援效果 = $(B - A) / \text{輸出實績}$

資料：1) 租稅支援實績：財務部.

2) 法定限界稅率：韓國開發研究院.